

#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6
----------	-----------

제안일자 : 2019. 02. 28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수정이유

- 골목길재생지역 선정대상 및 골목길재생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골목길재생 소요 재원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회계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와 연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수정함.

## 2. 수정 주요내용

- 골목길재생지역 선정대상에서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제외함(안 제3조제2항제3호 괄호 단서 신설).
-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골목길재생지역 인근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삭제).
- 골목길재생사업 및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삭제).
-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등).

##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활성화시키는”을 “활성화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정된”을 “제4조에 따라 선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제1항제4호”를 “제7조”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골목길재생 주민모임이란”을 “골목길주민협의체란”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을 “참여하여 의견을”으로, “해당골목마다”를 “해당 골목길에”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시장이 직접 골목길재생지역을 지정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생활인프라”를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미관”을 “경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골목길재생 주민모임”을 “골목길주민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로 한다.

안 제7조 제목 “(골목길재생 주민모임)”을 “(골목길주민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골목길재생 주민모임이”를 “골목길주민협의체가”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u>활성화</u>시키는 것을 말한다.</p> <p>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u>선정</u>된 지역을 말한다.</p> <p>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 나. (생략)</p> <p>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u>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제1</u></p>	<p>제2조(정의) ----- -----.</p> <p>1. (제정안과 같음)</p> <p>2. ----- ----- ----- ----- <u>활성화</u>하는 ----- .</p> <p>3. ----- ----- <u>제4조에 따라 선정</u>된 -----.</p> <p>4. ----- ----- ----- -----.</p> <p>가.~ 나. (제정안과 같음)</p> <p>다. ----- ----- <u>제7조</u> -----</p>

제 정 안	수 정 안
<p><u>항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u>라. (생략)</p> <p>5. <u>“골목길재생 주민모임”이란</u>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u>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골목마다</u>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p>	<p>-----</p> <p>--- <u>집수리 지원사업</u>라. (제정안과 같음)</p> <p>5. <u>“골목길주민협의체”란</u> -----</p> <p>-----</p> <p>---- <u>참여하여 의견을</u> -----</p> <p>----- <u>해당 골목길에</u> -----</p> <p>-----.</p>
<p>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2. (생략)</p> <p><u>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4. ~ 5. (생략)</p> <p>③ ~④ (생략)</p>	<p>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p> <p>-----.</p> <p>1. ~ 2.(제정안과 같음)</p> <p><u>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u></p> <p>4. ~ 5. (제정안과 같음)</p> <p>③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p> <p><u>시장은 골목길재생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보행생활권 내 골목길에 대하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개모</u></p>	<p>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p> <p><u>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u></p> <p>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p>

제 정 안	수 정 안
<p><u>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골목길재생지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u></p> <p>③ <u>심의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u></p>	<p><u>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u></p>
<p>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p> <p>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시장이 직접 골목길재생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p> <p>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u></li> <li>3. <u>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u></li> </ol>	<p>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p> <p>① ----- ----- ----- -----,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 -----.</p> <p>②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정안과 같음)</li> <li>2. <u>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u></li> <li>3. ----- <u>경관</u>-----</li> </ol>

제 정 안	수 정 안
<p>4. <u>골목길재생 주민모임</u>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p> <p>5. ~ 8. (생략)</p> <p>③ (생략)</p> <p>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u>주민의견 수렴결과</u>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4. <u>골목길주민협의체</u> ----- -----</p> <p>5. ~ 8.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 ----- <u>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u> ----- -----.</p>
<p>제7조(<u>골목길재생 주민모임</u>)</p> <p>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u>골목길재생 주민모임</u>이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u>골목길주민협의체</u>)</p> <p>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u>골목길주민협의체</u>가 ----- ----- -----.</p>
<p>제8조(<u>행정적·재정적 지원</u>) ① <u>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u>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제2조제4호에 따른 <u>골목길재생사업</u></p> <p>2. <u>골목길재생 주민모임 운영</u></p> <p>3. <u>골목길재생 제도개선·발전을</u></p>	<p>제8조(<u>행정적·재정적 지원</u>) <u>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u>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제2조제4호에 따른 <u>골목길재생사업</u></p> <p>2. <u>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u></p> <p>3. <u>골목길재생 제도개선·발전을</u></p>

제 정 안	수 정 안
<p><u>위한 조사·연구</u></p> <p>4. <u>전문가 자문 및 운영</u></p> <p>5. 「<u>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u>」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제1항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p> <p>6. <u>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 인근 범위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u></p> <p>7. <u>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u></p> <p>② <u>시장은 골목길재생사업 및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도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u></p> <p>제9조(<u>다른 법령과의 관계</u>)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u>위한 조사·연구</u></p> <p>4. <u>전문가 자문 및 운영</u></p> <p>5. 「<u>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u>」 제7조에 따른 <u>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u></p> <p>6. <u>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u></p> <p>제9조(<u>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u>)  -----  -----  -----  -----.</p>



##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

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 (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

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

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